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5

( 2014. 2. 26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이진표 ]**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2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4년 2월 19일

나. 의안번호 : 14-9

##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 기구의 설치운영),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제21조(한시 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 5. 개정이유

- 가. 도서관 및 교육센터 건립사업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확대 및 증원필요
- 나. 대외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담당조직 격상 필요
- 다. 주민숙원사업의 조기목표 달성을 위한 견인동력 필요

## 6. 주요내용

- 가. 구분청 주민생활국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추진단”을 신설(안 제3조의2)
- 나. 신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4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 검토결과 ]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T/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이 그간 자문단 위촉 및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토론회 및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축설계 공모·착공 등 추진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현재 임시기구(T/F팀)의 지위와 구성인원으로서는 건축설계 및 착공, 다양한 여론수렴 등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기관, 서울시, 교육기관,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본부 등 대외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정식기구로 격상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어
  
- 안 제3조의2(한시기구)를 신설하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에 한시적으로 마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을 두고, 안 부칙 제2조에 기구의 존속기간은 2014년 4월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채용 협의)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임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제13조제1항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2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4년 2월 19일

나. 의안번호 : 14-10

##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까지

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 통보(서울특별시 조직  
담당관-4090, 2013.04.05.)

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안내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4090, 2013.12.10.)

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96, 2014.01.09.)

## 5.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6. 주요내용

가. 마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74명”에서 “1,3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5명”에서 “1,271명”으로 증원(안 제2조)

### 〈 증 원 내 역 〉

구분	총계	사회복지인력		세무인력 (소득세전환)	안 전 인 력	주요현안사업			비고
		연차적 순 증	맞춤형 복 지			행정	토목	건축	
인 원	26	3	5	5	1	10	1	1	

나.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 검토결과 ]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12.31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운영 개선대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확충 계획」 등 정부시책에 의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 등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인건비 편성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책정한 2014년도 마포구 총액인건비 1,045억 7,895만 5천원 대비 91.48%인 956억 7,568만 3천원으로, 8.52%에 해당하는 89억 327만 2천원내에서 증원이 가능함.
  
- 이에 따라 기준인력 대비 부족한 13명을 최근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 중인 팀에 대한 정원으로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8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5명을 증원 하는 등 총 26명을 증원함으로써 마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 1,274명에서 1,3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5명에서 1,271명으로 조정하며,



-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안 부칙 제2조),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와 우리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도 총액인건비에 전액 확보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 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 ⑤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